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4.11.22.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식기, 포장용기, 조리도구 등에 적용되는 싱가포르 식품접촉 물질 규제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관련규제 개요

보통 식품 포장재나 용기, 식기류 등은 제품 특성상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이하 FCM)) 규제가 해당됩니다. 귀사제품은 식품에 접촉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FCM규제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 1973)에서 식품 및 음료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식품접촉물질(FCM)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자의 경우 성분분석 테스트를 통해 시험성적서, SDS 등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FCM 성분 목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기관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실험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법

- Sale of Food Act 1973

<https://sso.agc.gov.sg/Act/SFA1973#pr1->

식품판매법 주요 사항

1. FCM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는 제품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2. FCM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3.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포장 금지 물질

1. 비닐클로라이드 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1ppm 이상 함유
2.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기형성으로 알려진 화합물이나 기타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이 포함
3. 보관, 조리 또는 조리된 식품에는 납(lead), 안티몬(antimony),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

라벨링 요구사항

식품 판매법은 싱가포르의 FCM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할기관이 잘못된 라벨을 부착하거나 잘못 식별된 제품을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FCM labeling ASEAN guidelines을 준수하길 권고 드립니다.

- ASEAN General Guideline on Food Contact Materials > SECTION 7 LABELLING, 5쪽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ASEAN-General-Guideline-on-Food-Contact-Materials-Endorsed-26th-PPFWG.pdf>

관련규격

해당 식품 판매법에서 특정 FCM 안전 규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련 규격(e.g. EN, ASTM, ISO standards)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CM 관련 국제규격 예시 (아래 규격에 한하지 않음)

ASTM F1640

ASTM F3039-15

EN 13676

EN ISO 4531

귀사 제품에 사용된 식품접촉물질에 한 개 이상의 규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사양 및 용도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 검토**를 받으시고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인증기관에서 정확한 인증/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기관별/품목별로 시험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인증비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 ASEAN

ASEAN)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입니다.

ASEAN 식품 접촉 물질 지침 (ASEAN Guidelines on Food Contact Materials)

ASEAN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일반 지침을 참고 자료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로 진출하는 관련업체는 제품 안전성을 위해 해당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ASEAN Guidelines on Food Contact Materials

<https://ariseplus.asean.org/wp-content/uploads/2018/12/ASEAN-General-Guidelines-on-Food-Contact-Materials-BOOK-FINAL.pdf>

적합성 준수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이하 DOC))

ASEAN 가이드라인은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가 DoC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요청 시 고객 및 관련 당국에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는 DoC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험 보고서, 생산 레시피, 연락처 정보 및 기타 관련 문서와 같은 지원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ASEAN 지침에서는 모든 FCM이 GMP를 준수하는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관련 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SEAN Guidelines for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Food Contact Materials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ASEAN-GMP-Guideline-for-Food-Contact-Materials-endorsed-29PPFWG.pdf>

※ 출처

- Compliance Gate > Food Contact Materials Regulations in Singapore: An Overview

<https://www.compliancegate.com/food-contact-materials-regulations-singapore/>

- Sale of Food Act 1973 <https://sso.agc.gov.sg/Act/SFA1973#pr1>

- SGS > Food Contact Material Regulations - Asia Pacific Region

<https://www.sgs.com/en/services/food-contact-material-regulations-asia-pacific-region>

저희 1381인증표준 정보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전기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e.g. 아마존 내부규정)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에 기재)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문 의 처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KOTRA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singapore/KTMIUI010M.html>

TEL: ++(65) 6426-7200 / FAX: ++(65) 6223-5850 / info@kotra.sg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지원 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lId=PBLN_00000000093289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일반트랙 3차) 1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54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이미 공고된('24. 2. 29.) 패스트트랙인증* 지원은 당시 공고기준을 따름

| 구분 | 내용 |
|-------|--|
| 패스트트랙 |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패스트트랙 인증(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
| 일반트랙 |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유럽 CE(의료기기 등 패스트트랙 이외에), 중국 NMPA, 미국 FDA 등 |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모집 기간

| 구분 | 기간 |
|-------|--|
| 패스트트랙 | 24년 2월 29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까지(상시 모집) *패스트트랙은 상시 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 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
| 일반트랙 | '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 까지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 |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남] 2024년 체코·헝가리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lId=PBLN_00000000096648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제주]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lId=PBLN_00000000096653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Q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